

북한의 외국인투자관련 법령 분석 및 평가

諸 成 鑄*

▷ 目 次 ▷

- | | |
|--------------------------|---------------------------------|
| I. 序 論 | III. 外國人投資關聯 法令의 內容
및 問題點 分析 |
| II. 外國人投資關聯 法令 制定의
背景 | IV. 綜合的 評價와 展望 |

I. 序 論

북한은 1992년 10월 5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決定」으로 「外國人投資法」, 「合作法」 및 「外國人企業法」 등 3개 法을 제정·공표하고, 동년 10월 16일 정무원 결정 제148호로 合營法 施行細則을 개정한 데 이어 다시 1993년 1월 31일 「外國投資企業 및 外國人 稅金法」, 「外貨管理法」, 「自由經濟貿易地帶法」 등 3개 법령을 채택함으로써 서방의 선진자본과 기술을 끌어들이기 위한 法令整備를 가속화시키고 있다.¹⁾

* 民族統一研究院 研究委員

1) 北韓 官營 中央通信의 1992년 10월 6일 보도; 中央日報, 1993년 2월 9일자 참조.

이처럼 북한이 自由經濟貿易地帶法을 비롯한 수개의 외국인투자관련 법령을 새로이 제정한 것은 유엔開發計劃(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 UNDP)이 추진하고 있는 「豆滿江地域開發計劃」(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me : TRADP)에 부응하여 북한이 1991년 12월 28일 羅津·先鋒 自由經濟貿易地帶를 선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합영법만으로는 서방의 선진자본과 기술을 유치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法制的인 次元에서 외자유치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法令整備過程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금년 1월에 제정된 3개 법령은 지난해 10월 5일에 제정된 外國人投資法의 後續措置라고 할 수 있다.²⁾

북한의 외국인투자관련 법령으로서는 지난해 10월에 제정된 外國人投資法을 基本法으로 하여, 關聯 附屬法으로서 合營法(1984. 9. 8 제정), 合營會社所得稅法, 外國人所得稅法(1985. 3. 7 제정), 合作法, 外國人企業法, 外國投資企業 및 外國人 稅金法, 外貨管理法, 自由經濟貿易地帶法 등 8개 법이 마련되어 있다. 여기에 合營法施行細則(1985. 3. 20 제정, 1992. 10. 16 개정), 合營會社所得稅法 施行細則(1985. 5. 17 제정), 外國人所得稅法 施行細則(1985. 5. 17 제정) 등 3개의 細則이 이미 제정되어 있다. 이로써 북한의 外國人投資關聯 法令은 合營法 등 既制定되어 적용되고 있는 법령과 신설된 법령을 포함, 모두 12개로 늘어나게 되었다. 외국인의 투자 유치에 필요한 法制度의 基盤이 일단 갖추어졌으나, 앞으로 다시 근간에 제정된 법들의 後續措置로서 각각의 세칙 제정이 뒤따를 것이며, 토지법 및 은행법 등 관련 법령의 정비도 행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南北交流協力, 특히 物資交易이 1993년 팀스피리트훈련 결정, 「남한 조선노동당사건」, 북한의 核武器擴散防止條約(통칭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脫退 등으로 인한 南北關係 경색으로 다소 주춤하고 있지만, 앞으로 남북관계가 다시 호전되면 물자교역량은 다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반해 對北投資 등 南北間 協力事業의 경우 북한의 전반적

2) 「서울신문」 1993년 2월 12일자.

사업수준, 내수시장의 성숙 정도, 사회간접자본 등 북한내부의 투자환경이 열악하다는 사실에 비추어 북한기업과의 合營, 合作 등 對北 直接投資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보인다. 그러나 長期的으로는 북한이 다른 海外投資地域에 비해 거리가 가깝고 일본이나 대만기업과의 競爭이 치열하지 않은 지역이며 南北韓 企業人間 意思疏通에도 별 지장이 없음을 감안할 때, 對北 投資는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대북투자가 본격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령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찰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시각에서 本稿에서는 먼저 북한의 外國人投資關聯 法令의 제정배경과 이들 법령의 內容과 問題點에 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이어 북한의 외국인투자법령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북한의 투자유치 및 우리 기업의 대북투자에 관하여 전망해 보기로 한다. 외국인투자관련 법령을 분석함에 있어서 本稿에서는 1992년과 1993년에 새로이 제정된 6개 법령과 기존의 합영법 및 동 시행세칙만을 주로 검토하기로 한다.

II. 外國人投資關聯 法令 制定의 背景

북한은 1960년대까지는 중·소를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로부터의 經濟 支援과 住民消費 抑制를 통한 内部資源 動員의 極大化로 경제개발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1961년에 시작된 제1차 7개년계획은 中·蘇 理念紛爭 격화에 따른 사회주의국가 지원 감소로 계획기간을 3년 연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에 실패하였다.³⁾

1969년 중·소간 국경분쟁이 심화됨에 따라 그 동안 이를 양국에 대하여 等距離外交를 추진하던 북한에 대하여 이들 국가의 원조가 감소하게 되자, 중·소의 지원에 한계를 느낀 북한은 경제개발 6개년계획(1971~76)

3) 統一院 教育弘報局, “북한의 외국인투자관련법 분석·평가”, 「統一速報」, 제 92-11 호 (서울: 통일원, 1992), p. 3.

에서 서방국가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기술 및 경제성장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1973년의 제1차 石油波動(oil shock) 및 북한의 주력수출상품(연, 아연 등 1차상품)의 국제가격의 急落으로 外債累增만을 초래한 채 실패를 거듭하였다. 이처럼 社會主義國家 經濟支援 減少 속에서 外債償還能力 貧乏로 인한 서방차관의 도입 부진, 설비관리 운용능력 부족 등으로 경제개발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리하여 북한은 1984년 9월 외채상환의 부담없이 서방의 자본·기술을 유치하는 방도로서 북한의 회사 또는 기업소가 외국 또는 해외동포의 회사 또는 기업소와 합영(통상의 합작투자에 해당함)을 할 경우를 대비하여 중국의 「中外合資經營企業法」(1979년 제정)을 모델로 한 「合營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어서 1985년 3월 合營法施行細則, 合營會社所得稅法 및 外國人所得稅法을, 그리고 1985년 5월 合營會社所得稅法 細則 및 外國人所得稅法 細則을 제정하였다. 1986년 8월에는 「朝鮮國際合營總會社」를 설립하고, 1988년 12월 政務院內에 合營工業部를 新設하는 등 외자유치를 위한 制度 마련에도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서방국가 및 사회주의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특히 1989년에는 완전한 私有合營會社를 허용하기에 이르렀다.⁴⁾

그러나 합영법 등 외자유치 관련 법제도 마련에도 불구하고 政治·社會的 閉鎖性, 社會間接資本施設의 落後, 內需市場의 狹小, 外資誘致關聯法·制度 未備 등으로 합영유치 실적은 극히 부진하였다. 북한의 체제개혁이 병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投資環境은 서방기업가들로부터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평가받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재일교포 회사와의 소액규모의 합영

4) 三星經濟研究所, 「1992 北韓經濟와 南北關係」(서울: 三星經濟研究所, 1992), pp. 34~35; 崔周煥, 「北韓經濟論」(서울: 大旺社, 1992), p. 202; 그러나 合營工業部는 1990년 10월 폐지되었다. 합영법은 對外經濟事業部가 외국기업과의 합영사업에 대한 주무부처임을 명시하고 있으나, 현재로 합영사업은 合營工業總局이 담당하고 있다. 황의각, 「북한경제론」(서울: 나남, 1992), p. 244; 동용승, “북한의 외국인투자관계 법규 정비의 배경 및 의미,” 「世界經濟」(三星經濟研究所), 제41호(1992. 10. 25), p. 48; 한편 대외경제사업부는 최근 폐지되고 대외경제위원회에 흡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을 제외하면 合營實績은 미미한 상태에 머무를 수 밖에 없었다.⁵⁾ 즉 북한의 信用度⁶⁾ 등 經濟的 投資環境이 열악한 데다가 外國人投資制度마저 미비하였기 때문에⁷⁾ 1991년말 현재 朝總聯系 在日 商工人들이 주류(68건)를 이루는 100여건의 합영계약만이 체결되었으며, 총 투자규모는 1억 5천 만달러 정도에 불과하였다.⁸⁾

1989년 이후 동구 및 소련에서의 사회주의체제 해체, 특히 대외무역의 50% 이상을 의존해 왔던 對蘇經濟關係의 崩壞로 인해 주요 해외시장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무역규모도 급격히 감소되고, 이로 인한 경제침체가 가속화되었다. 1991년도 무역총액은 27.2억달러로 전년비 57% 감소되었으며, 경제성장율은 -5.2%로 1990년도(-3.7%)보다 더욱 침체되었다.⁹⁾

이러한 상황下에서 북한은 국제적 경제고립과 이로 인한 경제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경제개방의 필요성을 심각하게 인식하게 되었고, 1991년부터 대외정책을 전환하기 시작하였다. 즉 북한은 외국인투자의 적극 유치를 통하여 당면한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自由經濟貿易地帶 設置 등 제한된 경제개방을 검토하게 되었다. 여기에는 1990년 7월 중국 長春에서 열린 제1차 「東北亞經濟技術發展會議」(The Firs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conomic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in Northeast Asia)라는 이름의 民間 國際學術會議에서 처음으로 제기되고, 1991년 7월부터 유엔開發

5) 諸成鎬, “北韓 外國人投資法 – 5가지 문제점 : 羅津·先鋒地區 開發을 중심으로,” 「自由公論」, 통권 제311호 (1993. 2.), p. 188.

6) 북한은 1970년대 중반 이후 西方圈에 대한 對外債務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對外信用度가 극히 낮으며, 최근 국제은행가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더라도 國際的 信用度는 最下位로 평가받고 있는 실정이다. 즉 북한은 調查對象 총 113개 국가중 우간다, 수단 다음으로 對外信用度가 낮은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Institutional Investor* (March, 1992), p. 120 참조.

7) 中國이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오랜기간에 걸쳐 수많은 法令·條例를 제정·실시함으로써 외국인투자제도를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온 반면, 북한의 관련 제도는 전술한 바와 같이 「합영법」, 「합영회사소득세법」, 「외국인 소득세법」 및 각각 이들의 세칙을 포함 모두 6개에 불과하였다.

8) 統一院 情報分析室, 「週間 北韓動向」, 제95호 ('92. 10. 18~10. 24), p. 8; 統一院 教育弘報局, “북한의 외국인투자관련법 분석 평가,” p. 4.

9) 統一院, 「'92 北韓概要」(서울: 統一院, 1992), pp. 224~230 참조.

計劃이 관여하기 시작한 이른바 「豆滿江地域開發計劃」構想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¹⁰⁾

북한은 동북부 지방에 최고·최대의 부동항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확충하거나 또는 필요할 경우 새로운 항만을 최소의 비용으로 건설할 수 있는 바, 이를 바탕으로 두만강 인접지역에 조선산업, 철강산업, 석유화학산업 등을 유치하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북한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은 1991년 12월 28일 政務院 決定 제74호로 우수한 자연적 조건을 가진 항만인 나진·선봉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선포하는 등 對外經濟開放措置를 단행하였다.¹¹⁾

그 이후 북한은 여러 차례 구체적으로 이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북한에 대해 기술을 제공하고 새로운 기술로써 합영·합작하는 동북아시아의 기업들에게 이 나진·선봉지역을 개방하는 한편, 투자우대조치 등 여러가지 유리한 투자조건을 제시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특히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선포에 이어 法制度的인 投資與件 改善을 통해 남한 및 서방

10) 豆滿江地域開發計劃에 관해서는 諸成鎬,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現況과 展望－開發代案 및 法制度 中心－」, 統一情勢分析 92-07(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2) 참조.

11) 함북 나진·선봉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설정한다는 내용의 결정문을 채택했다”는 北韓「中央通信」의 1991년 12월 30일 보도. 「內外通信」, 제7641호 (서울: 內外通信社, 1991. 12. 31) 참조; 이와 같이 경제발전을 도모하려는 경제적 동기 외에도 북한이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선포한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고려가 있다고 생각된다. 북한은 80년대 중반 이후 전개된 사회주의권에서의 개혁과 개방, 그로 인한 탈이념과 탈냉전 시대의 도래, 구소련의 몰락과 동구권의 대변혁 등으로 사회주의체제가 붕괴하고 있는 일련의 대사건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한편 세계적인 대화해와 협력, 그리고 경제우선의 현실주의 등장 등 새로운 가치관과 질서가 대두됨을 목격하면서 북한은 이러한 새로운 가치관과 질서에 순응해야만 북한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북한은 이와 같이 체제의 존립에 위기감을 느낀 나머지 체제유지수단의 일환으로서 대외적 경제개방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 것이다. 그러한 대외적 개방의 표현으로서 북한은 개방의 물결이 유입되더라도 그 파급효과가 적을 것으로 판단한 奧地를 선택하였다. 그것이 북한의 동북부지역, 즉 나진·선봉지역이다. 현재는 나진·선봉지역만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선포되어 있으나, 앞으로 해주, 남포, 신의주 등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선포될 가능성이 있다. Aidan Foster-Carter, *Korea's Coming Reunification: Another East Asian Superpower?* (London: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1992), p. 19.

제국으로부터의 자본 및 기술도입을 촉진한다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둘러서 外國人投資關聯 法令을 정비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북한은 1992년 10월 5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에서 外國人投資法, 合作法, 外國人企業法 등 3개의 법령을 제정하는 한편 동년 10월 16일 합영법 시행세칙을 개정하였고, 그에 따른 後續措置로서 다시 1993년 1월 31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에서 「外國投資企業 및 外國人 稅金法」, 「外貨管理法」, 「自由經濟貿易地帶法」 등 3개 법령을 새로이 제정하기에 이른 것이다.¹²⁾

III. 外國人投資關聯 法令의 内容 및 問題點 分析

1. 外國人投資法

가. 内容

外國人投資法은 합영, 합작, 단독투자 등 북한에서의 외국인투자 전반을 규율하고 외국투자기업의 설립·운영에 관한 일반원칙과 질서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基本法 내지 一般法의 성격을 갖는다.¹³⁾ 合營法(1984년 제정)과 合作法, 外國人企業法은 각각 합영기업, 합작기업, 외국인기업의 설

12) 諸成鎬, “北韓 外國人投資法 – 5가지 문제점 : 羅津·先鋒地區 開發을 중심으로,” pp. 184~188 ; 이 외에도 북한 外資誘致關聯 法令의 制定背景에 대해서는 吳吉南, “북한의 외국인투자법 제정배경과 전망,” 「北韓」, 통권 제252호 (1992년 12월), pp. 22~31 ; 金淳培, “외국인투자법령의 제정,” 「統一」, 통권 제135호 (1992년 12월), pp. 60~62 참조.

13) 「內外通信」, “「외국인투자법」 제정배경과 전망 : 대폭적인 합영법 보완 불구, 투자수용한계 드러내,” 주간판 제818호 (서울 : 內外通信社, 1992. 10. 22), p. A1 ; 外國人投資法 제1조는 “세계 여러나라들과 경제협조를 확대발전시키는 것은 조선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외국투자가들이 공화국 영역안에 투자하는 것을 장려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동법의 제정목적을 기술하는 대신 북한의 대외경제정책을 친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합영법 제1조와 유사하며, 동 규정으로부터 立法目的을 間接的으로 유추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립·운영·해산과 분쟁처리를 규정하는 下位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합영과 관련하여 합영법의 규정과 충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外國人投資法이 新法으로서 優先的으로 適用되는 效果를 갖는다.¹⁴⁾

이 法上 外國人投資企業이라 함은 공화국영역안에 설립된 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기업을 말한다. 合作企業은 양측이 공동으로 투자하고 북한 측이 운영하며, 계약조건에 따라 투자를 상환하거나 또는 이윤을 배분하는 기업이다. 이에 비해 合營企業은 북한측 투자가와 외국측 투자가가 공동으로 투자·운영하며 투자지분에 따라 利潤을 分配하는 전형적인 합작투자기업(joint venture)이다. 그리고 外國人企業은 외국투자가가 단독으로 투자·경영하는 기업이다(제2조).¹⁵⁾

여기에서 북한은 과거 외국인투자형태를 합영에 국한하였던 것에서 탈피하여 외국인의 대북투자 형태를 확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북한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외국인투자형태를 合營(equity joint venture), 合作(contractual joint venture)와 外國人企業(wholly foreign-owned enterprise) 등 3가지 방식으로 구분하고 있다. 합영은 共同投資·共同經營 方式으로 이익배분과 손실부담은 持分에 따르고, 합작은 共同投資·北韓單獨經營 方式으로 利益分配은 계약에 따르고 損失은 북한이 부담하는 형태이다.¹⁶⁾ 外國人企業은 외국의 單獨投資·單獨經營 方式으로 利益과 損失負擔

14) 諸成鎬, “南北經濟交流協力에 따른 法的 問題와 對應方案,” 「저스티스」, 제26권 2호 (1992), p. 199 ; 이하 外國人投資法을 비롯한 外資誘致關聯 法令의 내용은 統一院 教育弘報局, “북한의 외국인투자관련법 분석·평가,” pp. 1~24 ; 김정한, “북한의 外國人投資關聯法 分析,” 「北方通商情報」 (대한무역진흥공사), 통권 제85호(1992년 11월), pp. 1~9 참조.

15) 合作企業과 外國人企業의 定義는 각각 합작법 제2조와 외국인기업법 제2조에서 보다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16) 北韓式 合作概念은 북한단독경영을 전제로 하는데 비해, 中國式 合作의 경우 외국인투자가가 經營 및 意思決定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북한의 경우 외국투자는 非常設의 共同協議機構를 통해 경영에 관한 주요문제를 협의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北韓式 合作의 경우 외국투자는 契約에 따른 利益을 分配받는 대신, 투자가측의 契約不履行에 따른 損失을 제외하고는 합작기업의 經營失敗에 따른 손실은 부담하지 않는다. 金容浩, “北韓의 投資開放措置 分析－ 최근 6개 外國人 投資關聯法 制定을 中心으로－,” 「主要國際問題分析」(外交安保研究院, 1993. 4. 28), p. 15.

은 전적으로 투자가에게 있는 기업이다.

여기서 합작기업과 합영기업은 북한 全地域에 설립할 수 있으나 外國人企業은 自由經濟貿易地帶 안에서만 창설·운영할 수 있다(제3조). 중국의 경우 100% 외국인 투자기업의 설립지역에 대한 制限規定이 없는데, 북한이 이처럼 외국인기업의 설립을 특정지역에 국한시킨 것은 經濟開放이 가져온 否定的 影響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외국의 기관·회사·기업체·개인 및 기타 경제조직은 물론 '共和國 領域 밖에 거주하는 朝鮮同胞'들도 투자가 가능하다(제5조).¹⁷⁾

投資對象은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체신, 과학기술, 관광, 유통, 금융을 비롯한 여러 부문이며(제6조), 첨단기술부문과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부문, 자원개발 및 하부구조건설부문,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부문에 대한 투자는 특히 장려된다(제7조). 이 장려부문 투자에 대해서는 所得稅를 비롯한 각종 稅金의 減免, 有利한 土地使用條件의 保障, 銀行貸付 提供 등 優待措置가 인정된다(제8조).

북한은 자유경제무역지대내에 투자한 외국투자기업에 대해서 特惠的經營活動條件을 보장함으로써 이 지역의 개발에 대한 북한의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 特惠라 함은 ① 특별히 정한 품목을 제외한 수출입 물자에 대한 관세 면제, ② 이윤이 발생하는 해로부터 3년까지 소득세 면제, ③ 그 다음 2년까지 소득세를 50% 범위내에서 감면, ④ 결산이윤의 14%로 소득세율 인하(여타 지역의 경우 25%) 등을 말한다(제9조). 이 외에도 북한은 동 지대내에서 기업을 창설하거나 그 운영을 위하여 출입하는 외국투자가들의 수속절차와 방법을 편리하게 정하도록 한다고 하여 出入國節次의 簡素化를 예정하고 있다(제10조).¹⁸⁾

외국투자가는 화폐, 현물, 공업소유권, 기술비결 등 재산과 재산권으로 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가치는 國際市場價格에 기초하여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평가한다(제12조).

외국투자가와 외국투자기업에게 필요한 토지는 최고 50년까지 賃貸될 수

17) 이와 동일한 내용은 합작법 제5조, 외국인기업법 제6조에도 규정되어 있다.

18) 自由經濟貿易地帶法 제41조 참조.

있다(제15조 1문). 기존의 합영법에서는 토지형태로 출자할 수 있고 합영회사가 국제가격지정기관에서 정한 토지사용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합영법 제21조 2문), 외국인투자법에서는 투자기업설립에 필요한 토지를 최고 50년까지 임대해주고, 임대기간 중 해당기관의 승인하에 讓渡 또는 相續을 인정하고 있다(제15조 2문). 이처럼 土地賃借의 期間을 「50년까지로」 보장한 것은 중국의 천진공단, 러시아의 나호트카 경제특구의 경우와 동일한 것이다.

외국투자기업의 인력채용에 관해서는 계약상 정해진 관리원,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 기능공을 제외하고는 북한주민을 채용하여야 한다. 北韓人の雇傭 및 解雇는 해당 勞動機關과의 契約에 의해서만 가능하다(제16조).¹⁹⁾

외국투자기업과 외국투자가의 투자재산은 원칙적으로 국유화 또는 수용하지 않으며, 不可避한 事情으로 국유화하거나 수용하는 경우에는 해당한 補償을 한다(제19조). 과거 합영법에서는 국유화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그 결과 북한당국의 의사에 따라 정당한 배상 없이 몰수가 가능하였는데, 이 법에서 원칙적으로 국유화를 금지한 것은 투자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한 조치라고 평가된다. 한편 이 법은 북한의 외화관리 법규에 따라 기업운영에서 얻은 합법적 이윤과 기타수입, 기업을 청산하고 남은 자금을 국외로 送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20조).

意見相異²⁰⁾ 發生時 1차적으로 協議의 방법으로 해결하되, 협의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 北韓의 裁判機關 또는 仲裁機關에서 紛爭事件을 심의·해결하거나 쌍방 합의에 따라 제3국 仲裁機關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다(제22조).

19) 중국의 경우 노동력의 직접 고용이 가능하다.

20) 북한은 ‘意見相異’와 ‘紛爭事件’을 구별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아마도 意見相異는 意見의 不一致, 意見對立 또는 意見差異와 동일한 개념으로서 ‘正式의 紛爭으로 公式化·顯在化되기 이전의 潛在的 紛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다시 말해서 분쟁의 개념을 法律的, 특히 國際法的으로 이해하지 않고, 通常의 概念의 紛爭(顯在的 紛爭 및 潛在的 紛爭 공히 포함) 中에서 顯在化되기 이전의 분쟁만을 意見相異라고 하는 것 같다. 그러나 一般國際法上 「紛爭」(dispute)이라 함은 ‘양자간의 어떤 法的 問題 또는 事實問題에 관한 意見의 不一致, 즉 法的 見解 또는 利害의 衝突’을 말한다. Mavrommatis Palestine Concession Case에서의 1924년 常設國際司法裁判所(Permanent Court of International Justice)의 判決 참조.

나. 問題點

첫째, 外國人投資法은 외국인과의 합영, 합작 및 단독투자에 관하여 개괄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세부내용에 있어서는 구체성이 없고 불분명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법적용상 여러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다. 여타 사회주의 국가의 법령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宣言性(政策方向 천명)·抽象性이 그대로 반영되어 전반적으로 내용이 불명확하며, 앞으로 보다 細部的인 基準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북한의 慎意的인 判斷이 개입할 소지가 있는 조항들이 많다.

가령 우대조치가 인정되는 投資獎勵對象과 관련하여, ‘첨단기술을 비롯한 現代的 技術과 국제시장에서 競爭力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부문의 의미가 분명치 않다(제7조 및 제8조 참조). 또 投資禁止 또는 制限對象에 관한 조항인 제11조에 있어서도 ‘民族經濟發展과 나라의 安全에 支障을 주거나 經濟技術的으로 뒤떨어지고 환경보호의 요구에 저촉되는 대상’이라는 不確定概念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투자시 인정되는 특혜와 관련하여, 이 법은 “이윤이 나는 해로부터… 그 다음 2년까지 소득세를 50% 범위에서 덜어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9조 2항). 즉 ‘덜어줄 수 있다’고任意的 減免規定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덜어주지 않을 수도 있음을 내포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 소득세감면이 인정되는지 동법 세칙에서 그 基準이 마련되지 않으면 慎意的 適用可能性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제12조에 따른 投資財產의 評價時 現物財產, 產業財產權 및 技術의 評價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 북한은 토지, 시설 및 설비 등을 過大評價하려 할 것이고, 반대로 우리측 기업의 산업재산권 또는 기술을 平價切下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투자재산의 가치는 국제시장가격을 기초로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國際市場價格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또는 어디를 기준으로 결정되는지도 반드시 분명치 않다. 이 개념에 대해서 남북한이 서로 달리 이해할

가능성도 있다. 만일 이를 둘러싸고 의견이 대립될 경우 合意導出이 쉽지 않을 것이므로 남북한의 기업들간에 체결될 합작투자계약에서 이 문제에 관해 분명히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북한의 所有權制度는 국가소유, 협동단체소유 그리고 개인소유로 되어 있으며 土地는 원칙적으로 國家所有이다. 그 결과 外國投資家와 外國投資企業은 民法 및 외국인투자법에 따라 土地賃借權 및 使用權 또는 管理權만을 가질 뿐이다. 따라서 北韓土地制度上 土地賃借權의 제3자에 대한 讓渡만이 가능하다. 자본주의국가에서 土地所有權者의 死亡時 인정되는 相續概念이 북한의 外國人 土地賃借制度에는 개입될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투자가와 외국투자기업이 국가로부터 賃貸받은 土地에 대하여 該當機關의 承認下에 제3자에게 상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15조), 여기서 북한이 相續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資本主義 法概念으로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또 대다수 국가의 民法上 財產權 相續의 경우 국가기관의 승인을 요하지도 않는다. 이상과 같은 점에 비추어 제15조의 相續concept의 규명이 필요할 것이다.

더욱이 ‘該當機關의 承認下에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해당기관이 승인하지 않을 경우 이 규정 자체가 아예 유명무실하게 될 위험성도 없지 않다.

넷째, 근로자의 雇傭이나 解雇 및 기업경영에 대한 북한당국의 干涉과 排他性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원칙적으로 북한의 인력을 채용하도록 하는 한편, 북한 노동행정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직원을 채용 또는 해고하도록 한 것이 그것이다. 이는 사실상 북한당국의 허가를 요구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바, 중국·베트남 등 다른 사회주의국가에서 일반적으로 합작기업이 직접 종업원들을 채용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한 데 비해 큰 차이를 드러내는 것으로 자본주의 시장원리의 수용태세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임을 말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²¹⁾

다섯째, 外國人投資法은 原則的으로 國有化를 禁止하고 있으나(제19

21) 「內外通信」, “「외국인투자법」 제정배경과 전망 : 대폭적인 합영법 보완 불구하고, 투자수 용한계 드러내,” pp. A3~A4.

조), 「不可避한 事情」이 있을 경우 國有化를 허용하고 있는데, 그 判斷에 있어서 북한당국의 자의성이 개입할 여지가 있다. 또 「해당한 보상」이란 용어와 관련,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정하기 어려운 漠然한 概念으로서 북한의 자의성이 개입될 소지가 있다고 평가된다.

여섯째, 외국인투자법에서는 외국으로부터의 技術導入이나 외국투자기업의 產業財產權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아 장차 이러한 財產權의 보호를 둘러싸고 紛爭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2. 合作法

가. 內容

합작의 대상은 수출품 생산 및 선진기술이 도입된 공업부문을 기본으로 하며, 관광·봉사(서비스)부문도 가능하다(제3조). 북한은 특히 현대적 설비 및 첨단기술부문과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부문에 대한 투자를 장려한다(제4조). 북한영역 밖에 거주하는 조선동포들도 이 법에 따라 합작할 수 있다(제5조).

합작을 하려는 기관·기업소·단체는 해당 상급기관과 協議하고 외국투자가와 合作契約을締結한 후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에 合作申請書를 제출해야 한다(제6조 1문).²²⁾ 政務院 對外經濟機關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承認 또는 否決의 「決定」을 하여야 한다(제7조). 합작기업은 합작이 승인된 후 30일이내에 해당 기업 소재지의 道·直轄市「行政·經濟委員會」에 登錄하여야 한다(제8조 1문).²³⁾ 契約에 따라 외국투자기축의 기술자를 받아 쓰거나 政務院 對外經濟機關과의 合意下에 제3국의 기술자 채용도 가능하다(제11조). 또한 국가의 승인하에 생산·경영에 필요한 물자수입 및 생산제품의 수출도 가능하다(제12조).

22) 이 때 申請書에는 계약서, 경제기술타산서를 비롯하여 필요한 關聯文件을 첨부해야 한다(제6조 2문).

23) 登錄한 날이 합작기업의 創設日로 된다(제8조 2문).

외국투자가의 투자에 대한 償還과 利潤分配는 합작제품으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雙方의 合意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하다(제13조). 이것은 북한에 합작투자하려는 외국투자가가 합작생산한 제품판매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부담해야 함을 의미한다. 生產된 製品과 賣上收入은 合作契約에 따라 償還 또는 分配義務를 이행하는 데 優先的으로 사용한다(제14조). 외국투자는 합작기업에서 얻은 合法的 利潤, 기타 수입을 북한의 외화관리 법규에 따라 國外로 送金할 수 있다(제15조).

합작당사자들은 非常設的인 共同協議機構를 조직할 수 있다. 공동협의기구에서는 새 기술도입과 제품의 質提高, 再投資를 비롯한 합작경영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들을 협의한다(제16조).

合作企業은 경영활동에 대한 決算은 월별·분기별·연별로 하고, 규정에 따라 財政簿記 決算書를 해당기관에 제출하며 財政銀行機關의 監督을 받는다(제17조). 합작기업은 계약에 따라 이윤을 분배하는 경우 법이 정한 데 따라 稅金을 납부해야 한다(제18조).

合作은 合作期間이 滿了하면 終了된다. 합작기업은 합작기간 만료 또는 기한전 해산의 경우,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채권·채무관계를 청산하며 登錄 取消手續(節次)을 밟아야 한다. 합작을 계속하려 할 경우, 기간만료 6개월 전에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제20조). 意見相異發生時 1차적으로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하되,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紛爭事件은 북한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서 해당절차에 따라 심의·해결한다(제21조).

나. 問題點

첫째, 북한식 合作의 概念에 의하면 外國投資家는 경영에 참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북한측이 경영 전담) 투자에 대한 危險負擔이 매우 크다. 또한 북한의 합작기업은 북한법인으로 간주된다. 중국의 合作經營企業은 중국내의 獨立法人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經營도 계약에 따라 理事會方式, 聯合管理機構方式 또는一方當事者에 의한 委託經營方式 등이

모두 가능하다. 물론 북한식 합작기업이 매우 탄력적인 형태의 中國式 合作企業을 모방하여 모든 기업운영의 기초적 사항을 계약에 의해 정하도록 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으나, 중국에 비해 북한의 統制가 상대적으로 강 할 것으로 판단된다.²⁴⁾

둘째, 合作對象의 業種, 嘉勵事業의 對象業種 등에 대한 규정도 具體性이 缺如되어 있다. 가령 先進技術이 도입된 제품(제3조), 現代的인 설비와 첨단기술, 국제시장에서 競爭力이 높은 제품(제4조) 등이 그러한 예이다. 북한은 施行細則 制定時 이러한 문제점을 是正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합작법은 “국가가 승인한 데 따라 생산 및 경영에 쓸 물자를 수입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자원배분이 국가의 중앙경제계획에 의해 결정되는 상황하에서 과연 합작기업이 북한내에서 物資購入 및 販賣 등 자유로이 物資調達을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넷째, 합작법에 의하면 외국투자가가 經營活動에 관한 한 危險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나 投資에 대한 債還과 利潤分配는 原則적으로 合作製品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제13조), 事實上 投資家側이 그 販賣에 따른 危險을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외국투자가측은 제품의 販路確保에 대한 對策을 마련한 연후에 북한측과 합작계약을 체결함이 요망된다.

다섯째, 제14조는 먼저 쓸 수 있다'(may)는 任意規定의 形式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쓰지 않을 수도 있다’는 反對解釋를 가능케 한다. 또한 여기서 使用의 主體가 합작기업인지 아니면 북한의 대외경제기관인지가 불분명하다.

여섯째, 사회주의국가의 경우 합작이나 합영사업에 當局의 干涉이 어느 정도는 불가피하나, 每月 經營決算을 당국에 보고하게 하는 것(제17조)은 지나친 干涉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법에서는 非常設的 共同協議機構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이 기구를 통하여 외국투자가가 經營에 참여하는

24) 이 외에도 북한의 합작기업의 경우, 북한측이 경영을 전담하고, 이윤분배는 합작제품을 기본으로 한다. 그러나 중국의 합작기업의 경우, 경영권 및 이윤분배 등이 契約에 따르므로 큰 제약은 가해지고 있지 않다. 특히 중국식 합작기업의 경우 利潤分配方式에 있어서 제한이 없음은 북한의 경우와 종대한 차이라 할 수 있다.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협의기구에서는 “새 기술도입과 제품의 질제고…, 重要한 問題들을 협의한다”고 하고 있으나, 어떠한 사항이 「重要한 問題」에 해당하는가 여부를 둘러싸고 合作當事者 間에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없지 않다.

일곱째, 合作法은 북한당국의 承認下에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나(제19조 2문 참조), 실제로는 다음 두가지 問題點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 그 하나는 契約不履行 責任이 북한측에 있다는 事實의 認定을 북한당국으로부터 받아내기가 어려울 것이며, 다른 하나는 북한당국이 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紛爭解決方式이 북한의 재판기관이나 중재기관의 판정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客觀的인 裁判이나 仲裁判定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덟째, 합작당사자의 계약의무 불이행에 따른 企業解散은 國際法의 慣例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나, 合作法에는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의 승인이 있어야 解散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외국투자가에게 不利할 수 있다.

아홉째, 분쟁해결방식과 관련하여 基本法인 外國人投資法에는 분쟁발생 시 합의에 따라 제3국의 중재기관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合作法에는 ‘北韓內 裁判機關 또는 仲裁機關에서 해당 節次에 따라 심의・해결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제3국에서의 해결을 배제하는 식의 해석・적용가능성이 없지 않다.²⁵⁾

3. 合營法 및 同 施行細則

가. 內容

합영당사자는 原則적으로 북한의 기관·회사·기업소 및 협동단체와 외국의 회사·기업소·개인 및 경제조직으로 제한되나(법 제1조 2문, 시행 세칙 제2조),例外的으로 ‘재일 상공인을 비롯하여 海外에 거주하는 朝鮮

25) 三星經濟研究所, 「1992 北韓經濟와 南北關係」, p. 44 ; 統一院 教育弘報局, “북한의 외국인투자관련법 분석 평가,” p. 16, 18 참조.

同胞'도 합영당사자가 될 수 있다(법 제5조, 시행세칙 제11조). 합영대상은 공업, 건설, 운수, 과학기술, 관광 등 여러 분야로 되어 있어 투자대상에는 사실상 제한이 없다(법 제2조, 시행세칙 제3조).²⁶⁾

합영회사는 필요한 문건을 해당기관에 제출, 동기관으로부터 동의를 얻은 북한측 합영당사자가 외국측 합영당사자와 합영계약을 체결한 후 合營工業總局(對外經濟機關)의 승인을 얻어 道行政經濟委員會에 登錄함으로써 설립된다(법 제6조, 시행세칙 제12조, 제13조 및 제19조 참조).²⁷⁾ 합작기업은 신청접수후 50일, 외국인기업은 80일안에 승인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있는데 비해, 합영공업총국은 합영회사 조직승인신청서 접수후 1달 이내에 심의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다(시행세칙 제16조). 승인기간은 합영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나, 개정 합영세칙에서 개정·보완된 것이다.

합영회사에 대한 출자액과 지분은 當事者間 合意에 의한다(법 제7조 1문, 시행세칙 제26조). 합영당사자는 出資目的物로서 화폐, 건물, 기계설비, 원료, 발명권, 기술문헌, 기술비결, 토지 사용권 등으로 출자할 수 있다(법 제7조 2문, 시행세칙 제27조 1문). 합영회사는 有限責任會社와 같은 法的 性格을 가지며, 상대방의 同意를 받아 出資持分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讓渡할 수 있다(법 제8조, 시행세칙 제8조 및 제38조 1문 참조). 합영회사는 계약에서 정한 등록자금과 출자총액을 줄일 수 없다(법 제9조, 시행세칙 제37조).²⁸⁾

합영회사는 最高議決機關으로 理事會를 두며(법 제10조, 시행세칙 제39조 1문), 議決方式은 합영회사규약의 채택 및 수정 보충, 출자총액의 추가와 양도, 회사기업의 중지 및 해산, 이사장·부이사장·이사·합영회사 사

26) 동 시행세칙 제3조는 합영대상분야로서 전자 및 자동화공업, 금속공업, 채취공업, 기계제작공업, 화학공업, 건재공업, 경공업, 농업, 수산업, 건설, 운수, 관광업 등을 예시하고 있다.

27) 합영회사는 회사 등록기관에 등록된 때로부터 法人으로 된다(시행세칙 제20조 2문).

28) 자본의 減資制限과 관련, 북한의 합영기업과 외국인기업의 경우 登錄資本의 減資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중국식 합영의 경우 감자가 불가능하나 외자기업의 경우 減資가 가능하다.

장·부사장·재정검열원·청산인의 임명 및 해임·결산과 분배문제 등은 이사회에 參加한 이사 全員의 贊成으로 결정하며, 그 밖의 문제들은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시행세칙 제44조).²⁹⁾

생산에 필요한 물자는 북한산 사용을 우선으로 하며 북한의 기관, 기업 소는 합영회사의 물자구입을 우선적으로 보장한다(시행세칙 제48조, 제49조 및 제51조 참조). 發明權, 技術文獻, 技術秘訣 및 북한에서 生產되지 않거나 購入할 수 없는 물자는 수입할 수 있다(시행세칙 제51조 및 제52조 참조).³⁰⁾

합영회사가 상대측 당사자의 투자 둑으로 반입하는 물자와 회사경영용으로 수입하는 물자의 경우, 반입승인만 받으면 되고 수입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이 때 반입한 물자에 대하여는 關稅를 부과하지 않는다(시행세칙 제59조). 생산된 제품은 輸出을 원칙으로 한다. 북한산 물자의 購入이나 생产业품의 북한내 販賣는 해당 무역기관 또는 다른 합영 또는 합작회사를 통해서 하며, 가격은 國際市場價格을 고려하여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법 제14조 1문, 시행세칙 제50조 및 제55조 참조). 합영회사는 회사 재산에 대하여 북한의 保險에 가입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시행세칙 제63조).

합영회사 종업원의 雇傭 및 解雇는 북한의 法과 合營當事者の 契約에 따라 행하며(법 제16조), 실무적으로는 북한 勞動行政機關을 통해서 한다(시행세칙 제64조 1문). 노동시간, 휴식, 노동보호는 북한 노동법규에 따른다(시행세칙 제68조). 합영회사 종업원들은 북한의 해당 법규법과 규정에 따르는 社會保險 및 社會保障 혜택을 받는다(시행세칙 제70조). 합영

29) 北한의 합영은 資本主義의 合作投資와 類似하나, 투자비율에 관계없이 合議的 意思決定 내지 共同意思決定 方式(중요사항의 경우 만장일치, 기타사항의 경우 2/3의 찬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投資比率에 따라 經營權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는 資本主義式 合作과 기본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30) 資材購買과 관련하여 국내구입이 불가능할 때 수입할 수 있다고 한 북한 합영법의 규정은, “합영회사가 국내조달과 해외조달의 선택권을 가지고 있으나 동일 조건이면 국내구입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중국의 中外合資經營企業法 實施條例 제57조와 대비되는 부분이다.

회사는 종업원들에게 지불되는 노동보수의 7%, 종업원은 노동보수의 1%를 각각 社會保險料로 납입하여야 한다(시행세칙 제71조).

합영회사는 북한 貿易銀行 또는 국가가 지정하는 다른 대외결제은행에 外貨計座와 「원」화계좌를 개설하고, 합영회사의 외화수입과 지출은 외화 계좌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법 제13조, 시행세칙 제74조). 經營計算은 북한 「원」화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합영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外貨로도 할 수 있다(시행세칙 제78조 1문). 합영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분배받은 돈」(利益配當金)의 送金이 보장되며(법 제22조, 동 시행세칙 제79조 1문 참조), 합영회사에서 일하는 외국인도 노임액의 必要한 部分을 해외로 송금할 수 있다(시행세칙 제80조).

결산년도는 1월 1일 ~ 12월 31일까지이다(시행세칙 제82조 1문). 決算은 년간 總收入에서 原價報償, 所得稅, 豐備基金, 生產 확대 및 기술발전기금을 비롯한 필요자금(法定準備金) 등을 공제한 후 出資持分에 따라 배분하는 방법으로 하며(법 제18조, 시행세칙 제83조 및 제88조 참조), 합영회사는 豐備基金이 등록자금의 25%가 될 때까지 매년 순소득중 5%씩 적립하여야 한다(법 제19조, 시행세칙 제87조).

모든 意見相異는 協議의 방법으로 해결하며, 협의에 의해 해결할 수 없는 분쟁은 북한의 裁判機關 또는 貿易仲裁機關에서 審議 · 解決하며(법 제26조, 시행세칙 제98조), 재판은 북한의 民事訴訟節次에 따른다(시행세칙 제100조). 合營當事者는 합의에 따라 제3국의 중재기관에 분쟁문제를 제기하여 해결할 수도 있다(법 제26조, 동 시행세칙 제102조).³¹⁾

나. 問題點

31) 합영법의 내용에 관해서는 法制處, 「北韓의 合營法制」, 北韓法制資料 제2호 - 法制資料 제160집 (서울: 法制處, 1992), pp. 1~403; 金辰, “北韓의 外國人投資關聯 法規,” 「서울大學校 法學」, 제31권 1·2호 (1990), pp. 133~150; Woong Shik Shin, “Investment in North Korea”, *The Korea Economic Weekly*, September 23. 1991, p. 23 등 참조.

첫째, 합영법에 의할 경우 남한의 기업이나 개인은 사실상 합영당사자로 될 수 없다. 이에 비하여 중국의 「臺灣同胞의 投資獎勵에 관한 規程」(關於鼓勵臺灣同胞投資的規定)은 대만동포를 합영당사자로 명시하고 이를 장려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相對的으로 북한법의 閉鎖性을 잘 말해주는 것이다.

둘째, 합영법은 합영대상에 관하여 資源開發과 같은 讓許事業(concession)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 결과 이와 같은 대규모 개발프로젝트의 특성이 무시된 채 일반적인 합영계약에 의해 규율됨으로써 외국투자가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비해 중국의 경우에는 「中外合作沿岸石油資源探查開發條例」가 별도로 제정되어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주로 북한이 출자하는 出資目的物, 가령 토지·건물 등의 評價基準이 불확실하여 분쟁발생의 소지가 있으며, 외국투자가의 경우 增資는 가능하나 減資는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投資保障에 있어서도 出資持分에 대한 관련 법규의 미비로 債權的 水準의 保護에 불과하다.

넷째, 理事會의 意思決定方式이 매우 경직적이다. 즉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의 경우 이사 全員一致의 찬성, 기타 사항의 경우 출석한理事의 2/3의 찬성을 요하고 있어 외국측 합영당사자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다.

다섯째, 북한산 원자재 구입시 國際市場價格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북한 貿易機關을 통하여 구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原資財의 安定的인確保가 어렵다.

여섯째, 종업원의 雇傭이나 解雇등에 있어서 기업의 自律權이 제한될 수 밖에 없으며, 勞動組合과 북한 職業同盟과의 관계 등 관련 규정에 欠缺이 있다.

일곱째, 합영회사 解散時 投資回收分에 대한 送金保障 여부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³²⁾

32) 합영법의 문제점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法制處, 「北韓의 合營法制」, pp. 225~245;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 연구소, 「北韓의 貿易 및 外國人投資制度」(서울: 한국수출입은행, 1991), pp. 67~68;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연구소, 「北韓經濟와 經濟協力 方向」(서울: 한국수출입은행, 1991), pp. 64~66; 한국외환은행, 「北韓의 合作投資 및 外國換管理制度」, 업무자료: 외관-217(서울: 한국외환은행, 1991), pp. 16~18; 全洪澤·曹東昊, “南北韓 投資協力의 政策課題,” 「南北韓 投資

4. 外國人企業法

가. 內容

외국인기업은 외국투자가가 기업설립에 필요한 資本의 全部를 投資하여 창설하며 獨自的으로 經營活動을 하는 기업으로서(제2조), 북한은 외국의 법인과 개인들이 이를 自由經濟貿易地帶內에 창설·운영하는 것을 허용한다(제1조). 투자대상분야는 전자, 자동화, 기계제작, 식료품가공, 괴복가공 및 일용품 등 부문의 工業과 운수, 봉사(서비스) 등이다. 다만 국가의 安全에 支障을 주거나 技術的으로 落後한 기업은 창설할 수 없다(제3조).

국가는 외국투자가가 투자한 자본과 기업운영에서 얻은 소득을 법적으로 보호한다(제4조). 북한영역 밖에 거주하는 조선동포들도 자유경제무역지 대내에서 독자적으로 기업을 창설·운영할 수 있다(제6조).

政務院 對外經濟機關은 외국인기업 創設申請書 接受日로부터 80일내에 承認 또는 否決을 決定하여야 한다(제8조). 기업창설 승인후 30일내에 기업소재지의 道 行政經濟委員會에 登錄하고, 그 후 20일내에 기업소재지의 財政機關에 稅務登錄을 해야 한다(제9조). 부득이한 事情으로 정한 기간 내에 투자할 수 없을 경우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 投資期日을 연장할 수 있다(제12조 2문).

외국인기업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북한에서 구입하거나 외국에서 수입할 수 있으며, 생산제품의 수출 및 북한내 판매가 가능하다(제16조). 북한의 원료·자재·설비의 구입이나 생산제품의 북한내 판매는 북한 무역 기관을 통해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제17조). 외국인기업은 기업소재지의 노동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북한인력을 채용해야 하며, 이들을 해고할 수도 있다. 외국의 기술자·기능공의 채용시 정무원 대외경제기관

協力의 當面課題와 豆滿江地域開發計劃」(서울: 韓國開發研究院, 1992), pp. 28~36; 申東秀, “북한합영법의 종합적 비판,” 「통일한국」, 통권 제12호 (1984. 12.), pp. 56~65.

과의 합의가 요구된다(제20조).

외국인기업의 종업원들은 職業同盟組織을 결성할 수 있고, 외국인 기업은 직업동맹조직의 활동조건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제21조 1문 및 3문). 외국인기업은 기업운영에서 얻은 合法的 利潤을 再投資할 수 있고, 관계법 규에 따라 海外에 送金할 수도 있다(제22조). 외국인기업은 보험에 가입 하려 할 경우 北韓의 保險에 가입해야 하며(제23조), 관련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제24조). 외국인기업이 경영에 필요한 물자수입 또는 생산제품의 수출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제25조). 외국인기업은 존속기간내에 등록자본을 줄일 수 없다(제26조 3문).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을 비롯하여 관계기관은 외국인기업법을 위반할 경우 그 情狀에 따라 기업을 中止 또는 解散시키거나 罰金을 부과할 수 있다(제29조). 기업이 解散되거나 破產할 경우 道 行政經濟委員會에 申告해야 하며, 해산 또는 파산되는 기업의 재산은 清算手續이 종료하기 전에 처리할 수 없다(제30조). 외국인기업과 관련한 意見相異는 일차적으로 協議의 방법으로 해결하고,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은 紛爭事件은 北韓 裁判機關 또는 仲裁機關에서 해당절차에 따라 심의·해결한다(제31조).

나. 問題點

첫째, 외국인기업의 설립은 자유경제무역지대내로 한정하고 있으나, 현재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선포된 羅津·先鋒地域의 경우 短期的으로 볼 때 常住人口 不足, 社會間接資本施設 未備 등으로 투자여건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아직까지 이 지역은 외국투자가에게 단독투자를 할만큼 魅力의인 投資對象 候補地가 되지 못하므로 법제도 정비에도 불구하고 投資誘致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³³⁾

둘째, 外國人企業法은 ‘나라의 安全에 지장을 주거나 技術的으로 뒤떨어진 기업’은 창설할 수 없으며(제3조 참조) ‘人民經濟發展에 障碍를 주는

33) 諸成鎬,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現況과 展望」, p. 89, 91 참조.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5조 참조), 이들에 대한 概念 및 判斷基準이 모호하다.

셋째, 기업창설에 필요한 문서인 '정무원 자금신용확인서를 비롯한 審議 · 批准에 필요한 文件'(제7조)의 범위가 분명치 않다. 이 법의 세칙 제정 시 이에 관해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넷째, 外國人企業은 기업을 등록한 道 行政經濟委員會에 生產 및 輸出計劃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제15조), 保險도 北韓保險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제23조), 이들은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투자가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북한의 보험제도는 현재 극히 미비한 상태이며 보험기관의 위험담보 능력도 미약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당분간 외국인기업이 기업의 安全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본국의 은행에 輸出保險을 들거나 별도의 國際保險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이 법은 "외국인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과 관련한 財政簿記計算規範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19조), 앞으로 이 조항의 後續措置로서 會計關聯 法制의 補完 · 整備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 조항은 실효성이 없게 될 것이다.

여섯째, 이 법의 경우에도 雇傭의 硬直性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제20조 참조). 특히 북한은 다른 외자유치관련 법규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이 법에만 규정되어 있는 職業同盟組織을 악용함으로써 사실상 외국인기업의 경영활동을 통제할 가능성이 있다(제21조 참조).

일곱째, 외국인기업의 경우 增資는 가능하나 減資는 불가능하도록 규정하여(제26조 참조), 외국투자가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

여덟째,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을 비롯한 해당기관은 외국인기업이 이 법을 위반할 경우 그 정상에 따라 기업을 중개 또는 해산시키거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제29조), 여기서 行爲主體가 模糊하고 惡用可能性 마저 있다고 보인다.

아홉째, 紛爭事件 역시 合作法과 마찬가지로 북한 裁判機關 또는 仲裁機關에서만 해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당사자간 합의를 조건으로 제3국 중재기관에서 분쟁해결을 시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外國人投資法과의

괴리가 노정되고 있다. 그 결과 이 조항의 適用時 북한당국의 慷意性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다.³⁴⁾

5. 外國投資企業 및 外國人 稅金法

가. 內容

外國投資企業 및 外國人 稅金法은 기존의 외국인투자관련 법들과는 달리 비교적 구체적이고, 외국투자가들에게 적용할 稅制를 하나로 둑어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이 북한영역내에서 경제거래를 하거나 소득을 얻는 등 경제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諸般 稅金問題를 包括的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동법은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에 대한 세금과 관련한 一般法으로서 外國投資企業 및 外國人 稅金法의 基本, 所得稅(기업 및 개인), 財產稅, 相續稅, 去來稅, 地方稅, 이와 관련된 制裁 및 申訴請願(우리의 異議申請에 해당) 등을 규율하고 있다.³⁵⁾ 이 법은 기존의 합영회사소득세법 및 동 세칙, 외국인소득세법 및 동 세칙과 충돌되는 부분이 적지 않은 바, 이 법의 제정으로 북한은 後法優先의 原則에 따라 外資關聯 稅制에 관한 기존 법령, 즉 合營會社所得稅法 및 同 細則, 外國人所得稅法 및 同細則 등을 ‘事實上 廢止’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³⁶⁾

外國投資企業과 外國人的 稅金登錄은 소재지나 거주지의 재정기관에 한

34) 三星經濟研究所, 「1992 北韓經濟와 南北關係」, p. 44; 統一院 教育弘報局, “북한의 외국인투자관련법 분석·평가,” pp. 20~21.

35) 外國投資企業 및 外國人 稅金法, 自由經濟貿易地帶法 및 外貨管理法의 내용에 관해서는 統一院, 「月刊 北韓動向」, 統分 93-3-23 (서울: 통일원, 1993), pp. 20~40 참조.

36) 外國投資企業 및 外國人 稅金法의 경우 그 내용의 대부분이 중국의 관련 법규를 원용한 것으로 보이나, 中國과는 달리 외국투자가들에 적용할 각종 稅制를 하나로 統合하여 제정되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경우 稅制는 「外國投資企業 및 外國企業 所得稅」, 「個人所得稅」, 「工商統一稅」, 「都市不動產稅」, 「車輛 船舶使用許可稅」 등으로 다양하게 나누어져 있다; 本稿에서는 合營會社所得稅法 및 同 細則, 外國人所得稅法 및 同 細則 등에 관해서는 고찰하지 않기로 한다.

다. 기업을 설립하거나 統合, 分離, 解散하는 경우 登錄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해당 재정기관에 稅務登錄 變更, 取消 手續을 한다(제2조). 외국투자 기업의 財政簿記 計算은 외국인투자기업과 관련한 북한의 재정부기 계산규범에 따른다. 재정부기 계산과 관련한 서류는 5년 동안 보관하며 필요에 따라 보관기간을 늘릴 수 있다(제3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의 세금은 북한 「원」으로 계산하여, 受益者가 直接 納付하거나 수익금을 지불하는 單位가 控除하여 납부한다(제4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의 稅金納付 定型에 대한 監督統制 事業은 재정기관이 담당한다(제5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자국정부와 북한정부사이에 체결한 세금과 관련한 협정에서 이 법과 다르게 세금문제를 정하였을 경우 당해 협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제7조).

外國投資企業은 북한영역 안에서 기업활동으로 얻은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고정재산의 임대 및 판매 소득, 재산양도소득, 공업소유권, 기술비결, 경영과 관련한 봉사를 제공하여 얻은 소득을 비롯한 기타 소득에 대하여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북한영역 밖의 支社, 出張所, 子會社 등에서 얻은 소득도 기업소득세 과세대상이다(제8조).

外國投資企業의 所得稅率은 原則的으로 決算利潤의 25%이지만,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설립된 외국투자기업의 소득세율은 14%, 국가가 장려하는 첨단기술부문, 자원개발과 하부구조건설 부문,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 부문의 기업소득세율은 10%이다(제12조). 한편 배당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 특허권사용료를 비롯한 기타소득을 얻은 경우, 소득세는 소득액의 20% 세율을 적용하되,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경우 10% 세율을 적용한다(제13조). 한편 총투자액 6천만원 이상의 하부구조 건설부문 투자의 경우, 이 윤발생시부터 4년간 기업소득세가 면제되고, 그 다음 3년간은 50%까지 감면이 가능하다.

이처럼 북한의 경우 一般地域에서의 외국투자기업의 기업소득세율을 決算利率의 25%로 하고 自由經濟貿易地帶에 설립된 외국투자기업의 소득세율은 결산이율의 14%로 하고 있는 바, 이는 중국이 一般地域에서의 소득세율을 30%로 하고 經濟特區 또는 開放區에서는 15%로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각각 1~5% 낮게 책정된 것이다. 북한이 이와 같이 企業所得稅率을 중국에 비해 낮게 책정한 것은 유엔開發計劃의 「豆滿江地域開發計劃」과 관련하여 外資誘致面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을 의식하여 보다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는 데서 비롯된 조치라고 판단된다.³⁷⁾

投資獎勵部門과 自由經濟貿易地帶의 生產部門의 외국투자기업이 10년 이상 기업을 운영할 경우, 기업소득세를 이윤이 나는 해로부터 3년간 免除하고, 그 다음 2년간은 50% 범위에서 감면해 줄 수 있다(제15조 2항). 제12조와 제15조 2항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투자장려부문(경영기간 10년 이상)의 경우 4~5년차에는 기업소득세의 5%의 세율, 그리고 장려부문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자유경제무역지대내에서 생산부문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경영기간 10년 이상)은 7%의 세율이 각각 적용되게 된다.

또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서비스부문의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所得稅 免除 및 減免과 自由經濟貿易地帶의 下部構造建設部門에 참여한 외국투자기업의 所得稅 免除 및 減免가 인정되며(제15조 3항 및 4항), 외국투자기업이 利潤을 再投資하여 5년 이상 운영할 경우 재투자분에 대한 納付所得稅額의 50%를 返還받을 수 있고, 하부구조건설부문에 재투자하는 경우 재투자분에 대한 납부소득세액의 全額을 반환받을 수 있다(제16조).

北韓領域內에서 所得을 얻은 外國人은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北韓領域內에서 1년 이상 滯留하거나 居住하는 外國人’은 北韓領域外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서도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제17조). 이처럼 개인소득세의 경우 1년 이상 거주자와 체류자에 대해서도 외국에서 취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中國보다 嚴格한 徵稅를 의도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1년 이상 5년 미만 거주자의 경우 國外所得中 中國으로 送金된 부분에 대해서만 課稅對象에 포함시키고 있을 뿐이다.

個人所得稅 課稅對象은 ① 노동보수에 의한 소득, ② 배당소득, ③ 공업소유권과 기술비결, 저작권의 제공에 의한 소득, ④ 이자소득, ⑤ 임대소득, ⑥ 재산판매소득, ⑦ 증여소득, ⑧ 개인기업소득 등이다(제18조).

37) 內外通信, “외국투자 유치위한 법령정비 가속화,” p. A2; 中央日報, 1993년 2월 9일자.

個人所得稅率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노동보수에 의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경우 보수액이 월 2천원 이하인 경우 면제되고, 배당소득, 공업소유권과 기술비결, 저작권 제공에 의한 소득 등은 20%, 재산판매소득, 개인기업소득은 25%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제19조).

外國人은 북한에 가지고 있는 建物과 船舶, 飛行機에 대하여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自由經濟貿易地帶內에서는 建物에 대한 재산세를 5년간 免除한다(제25조).

상속세와 관련하여 북한내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은 외국인 뿐만 아니라 북한영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공화국 영역 밖에 있는 재산을 상속 받았을 경우에도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제31조).

나. 問題點

첫째, 外國投資企業 및 外國人 稅金法은 企業所得稅의 경우 중국보다 유리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個人所得稅의 경우에는 중국에 비해 다소不利하다. 즉 중국은 「개인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세칙에서 1년 이상 5년 미만 거주자는 외국에서 취득한 소득중 중국으로 송금된 부분에 대해서만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단 6년째부터는 북한과 동일), 북한의 경우 “공화국 영역안에 1년 이상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외국인은 공화국 영역 밖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도 개인소득세를 바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제17조).

둘째, 外國投資企業 및 外國人 稅金法은 「適用範圍」에 ‘공화국 영역내에서 경제행위를 하는 영역밖 거주 조선동포’(제6조)도 포함시킴으로써 이 법이 우리 기업의 對北投資에 대해서도 규율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그런데 앞으로 南北經濟交流協力共同委員會에서 南北間 二重課稅 防止 및 投資保障 등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이 稅法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 그것은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자기나라 정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사이에 체결한 세금과 관련한 협정에서 이 법과 다르게 세금 문제를 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협정에 따라 세금을 바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있기 때문이다(제17조). 만일 남북간 합의를 國家間의 協定으로 볼 경우 동 협정이 우선 적용될 것이나, 만약 협정으로 보지 않을 경우에는 남북간에 조세와 관련한 보다 유리한 合意가 이루어지더라도 外國投資企業 및 外國人 稅金法이 적용될 수 밖에 없는 모순이 야기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상속세관련 조문은 특히 거주 외국인이 北韓領域外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을 경우에도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이는 朝總聯系 北送同胞 및 북한에 거주하는 日本人妻中 북한국적 未取得者들이 在日家族으로부터 받게 되는 財產相續分을 북한으로 환수하기 위한 意圖的措置라고 판단된다. 이는 二重課稅가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북한이 과연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일시체류 외국인의 海外 相續財產에 대해 課稅할 수 있는 能力이 있는지는 의심스럽다.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종업원은 居住地規定을 이용하여 課稅適用을 피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은 「居住者」의 개념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6. 自由經濟貿易地帶法

가. 內容

自由經濟貿易地帶法은 나진 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외국의 자본과 기술유치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서 외국투자기업 및 투자가들로 하여금 이 법이 정한 새로운 제도와 질서에 따라 동 지대내에서 경제·무역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다.³⁸⁾ 自由經濟貿易地帶法은 1991년 12월 선포된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를 비롯하여 앞으로 지정될 자유경제무역지대내의 외국인투자를 규율하는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이 법은 自由經濟貿易地帶法의 基本, 管理機關의 權限과 任務, 經濟活動 條件의 保障,

38) 이 법의立法目的에 관해서 자유경제무역지대법 제1조는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은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창설하고 효과적으로 관리·운영하여, 대외경제협력과 교류를 확대·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한다”고 하고 있다.

關稅, 通貨金融, 擔保 및 特惠, 紛爭解決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³⁹⁾ 이 법의 특징은 자유경제무역지대내의 기업활동에 대한 조세감면 우대조치 외에도 동 지대내에서의 投資節次의 分權化 및 簡素化, 가격결정의 자율권 인정,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외화시장의 허용 등을 통해서 동 지대를 대외 경제개방의 창구로 활용하겠다는 정책의지를 밝히고 있다는 점에 있다.

자유경제무역지대는 ‘특혜적인 무역 및 중계수송과 수출가공, 금융, 봉사(서비스) 지역으로 선포된 북한의 일정한 영역’을 말한다. 이 자유경제무역지대에는 북한의 主權이 행사되며, 이 지대에서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투자는 국가가 특별히 수립한 제도와 질서에 따라 경제무역활동을 할 수 있다(제2조). 이러한 규정은 북한이 領土主權의 制限에 反對한다는 基本立場을 법령을 통해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⁴⁰⁾

자유경제무역지대의 管理機關에는 대외경제위원회와 지대당국이 있다. 對外經濟委員會는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개발과 경제관리·운영을 위임받은 중앙집행기관이며,⁴¹⁾ 地帶當局은 현지 집행기관이다(제8조).

對外經濟委員會는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개발, 경제관리·운영과 관련한 執行對策 수립, 경제관리·운영사업 指導, 총 투자액 2천만원 이상의 하부 구조건설 대상과 총 투자액 1천만원 이상의 그 밖의 投資對象의 審議·承認을 담당한다(제9조). 이에 비해 地帶當國은 행정경제부서와 외국투자관련 대외경제부서로 구성되며,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개발과 경제관리·운영 사업을 조직·집행한다(제11조). 지대당국은 구체적으로 ① 주민행정, 도시경영 등 행정경제사업 실시, ② 사회질서 유지 및 인신과 재산 보호, ③ 지대의 개발계획 작성·선전·집행, ④ 투자신청 접수, 총 투자액 2천만원

39) 內外通信, “외국인투자법의 후속조치로 〈외국인세금법〉〈외화관리법〉 등 채택”, 제 8247호 (서울: 內外通信社, 1993. 2. 6), p. A2.

40) Ibid.

41) 북한은 1992년 10월 북경에서 열린 UNDP주관의 제2차 計劃管理委員會 (Programme Management Committee: PMC)에서 國際管理(international management)에 동의한다는 점을 괴역한 바 있으나(1992. 10. 11 제2차 PMC에서 채택된 Aide-memoire 참조), 이 조항에 비추어 볼 때 영토주권의 제한에 반대한다는 기본입장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하부구조건설 대상과 총 투자액 1천만원 이상의 그 밖의 투자대상의 심의·승인, ⑤ 기업등록 및 영업허가, ⑥ 투자가의 인력채용 지원, ⑦ 토지 및 건물 임대 또는 양도, ⑧ 직·간접의 봉사 제공, ⑨ 지대내 투자와 개발 촉진 및 관리운영·개선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제12조).

이처럼 북한은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개발·운영을 위한 機關을 中央의 對外經濟委員會와 現地 行政經濟部署인 地帶當局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중앙정부가 대외개방을 통제하는 동시에, 제한적이나마 地方分權的인 요소를 도입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對外經濟委員會를 자유경제무역지대의 開發과 管理運營을 담당하는 중앙기관으로 규정함으로써 과거 貿易部와의 業務分擔이 不分明했던 對外經濟委員會가 향후 북한의 대외 경제개방을 이끄는 핵심기구로 등장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외국투자가는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 투자하여 기업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제18조).⁴²⁾ 즉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서 모든 외국투자기업(합영－합작－단독투자 불문) 및 외국인투자가들의 자유로운 企業創設과 經濟活動이 保障된다.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서 필요한 토지를 임차할 수 있으며, 임대기관의 승인하에 임차기간을 연기받을 수 있다(제20조). 이는 외국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조치라 할 수 있다. 또한 모든 상품의 지대내 반출입이 자유로이 허용된다(제17조 1문).

貿易船과 船員들은 國籍에 관계없이 지대안의 貿易港을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다(제23조). 자유경제무역지대내에서의 외국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대내에 출입하는 외국인에게 無查證制度를 시행한다(제41조).

외국투자기업이 원료·자재 및 부분품의 가공을 자유경제무역지대 밖에 있는 북한기업소에 委託할 수 있다. 자유경제무역지대 밖에서 수행한 가공액이 기업 전체 생산액의 40%를 넘지 않는 경우 그 위탁가공은 자유경제무역지대 내에서 수행한 생산활동과 동일하게 취급된다(제24조).

상품의 價格은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다. 다만 일부 大衆必需品의 가격은 국가에 의해 결정된다(제22조). 이는 市場

42) 이 조항은 外國人投資法에서 외국투자가가 자유경제무역지대내에 ‘단독으로’ 투자, 기업활동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한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經濟原理의 자유경제무역지대내 도입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향후 북한경제 체제에 적지 않은 파급효과를 가져 올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다. 북한은 이 점을 의식하여 동조 후단에서 국가가 대중필수품 가격을 통제도록 하고, 외국인기업법 제21조에서 직업동맹조직의 의무화 등을 아울러 규정하고 있다.

자유경제무역지대내에서는 特惠關稅制度가 실시된다(제25조). 가공수출 목적으로 지대내로 수입한 상품, 생산 및 경영에 필요한 물자와 지대내에서 생산한 수출상품, 투자가에게 필요한 일정한 양의 사무용품과 생활용품, 지대건설에 필요한 물자, 타국의 통과무역화물 등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한다(제26조). 단 외국으로부터 자유경제무역지대내에 상품을 팔기 위해 반입하는 경우, 자유경제무역지대내에서 생산되었거나 수입한 상품을 북한의 다른 지역에 팔기 위해 반출하는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제27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자유경제무역지대내의 정해진 장소에서 외화 유가증권을 거래할 수 있다(제34조). 지대내의 은행은 외화관리기관의 승인하에 非居住者들간의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제33조). 외국투자가 등에게 이윤, 이자, 배당금, 임대료, 봉사료, 재산판매 수입금 등 소득의 國外送金과 경영기간 종료후 지대내 搬入財產의 搬出이 허용된다(제35조). 자유경제무역지대내의 企業所得稅率은 決算利潤의 14 %로 한다(제36조).⁴³⁾

장려부문에 투자하는 투자는 입지조건이 유리한 토지를 임대받으며, 임대시 賃貸料 引下 등 便宜를 제공받는 한편(제38조 참조), 북한의 금융 기관으로부터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貸付받을 수 있다(제39조).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意見相異는 一次的으로 協議의 방법으로 해결하고(제42조),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은 紛爭事件은 北韓 裁判機關 또는 仲裁機關에서 해당절차에 따라 심의 해결하며, 제3국

43) 이는 외국인투자법 제9조 2항을 再確認한 것이다.

의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 수도 있다(제43조).

나. 問題點

첫째,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도 북한의 인력알선기관과 체결한 계약을 통해서 인력을 채용, 해고하도록 하고 있어 勞務管理의 硬直性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무역선과 선원들이 국적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항은 너무나 일반적·추상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 가령 검역절차에 관해서 언급이 없다. 또한 아무리 자유경제무역지대라 하더라도 국가안보사법, 마약사법 등의 자유로운 출입은 허용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법에서 마치 완전히 자유로운 출입국을 보장하고 있는 듯 하나, 앞으로 출입국관리법이 제정될 때 비로소 그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날 것이다. 결국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出入國管理法이라는 一般法을 제정함과 동시에, 동법에서 자유무역지대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거나 또는 자유경제무역지대법에서 특례를 정하는 것이 법리상 타당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셋째,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는 소위 「黃金의 小三角地域」(Golden Triangle)에 속하는 북한지역이다. 현재 UNDP는 이 지역을 國際管理 하에 개발하여, 장차 國際都市로 발전시킬 것을 계획하고 있다. 앞으로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의 장래를 내다 볼 때 자유경제무역지대내에서 조선「원」화만을 유통화폐로 하는 한편, 모든 결제는 조선「원」 또는 전 환성 외화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지나친 국가의 干涉이 아닐까 생각된다. 물론 북한이 외화수입을 위해서 북한화폐로의 교환을 의무화하는 것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나, 북한의 경제체제 특성상 외국인 투자의 보호를 위해서 여기에는例外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이 법의 규정상으로는 자유경제무역지대내의 경우 販賣者와 購買者間의 合意에 의해 價格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여 市場形成의 可能性을 열어 놓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시장기능 활용에 대한 북한당국의 의사는

확실한 것 같지 않다. 자유경제무역지대가 對外經濟開放의 窓口役割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中國의 經濟特區와 마찬가지로 資源配分을 市場調節機能에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⁴⁴⁾

7. 外貨管理法

가. 內容

外貨管理法은 외화거래, 외화유가증권의 발행, 외화현금·유가증권 및 귀금속의 반출입 등에 대한 原則과 秩序를 규율한다(제2조).⁴⁵⁾ 외화에는 ① 轉換性 있는 外國貨幣, ② 국가채권, 전환가능 회사채권을 비롯한 外貨有價證券, ③ 수형(어음), 행표(수표), 양도성 예금증서를 비롯한 外貨支拂手段, ④ 기타 외화자금, ⑤ 장식품이 아닌 금, 은, 백금과 국제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금화, 은화 등 貴金屬이 포함된다(제3조).

外國換業務의 전문은행은 貿易銀行이다. 다른 은행도 외화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외국환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제5조). 북한내에서는 외화유통이 금지되며, 외화의 사고팔기, 저금, 예금, 저당 등은 외국환업무를 맡은 은행, 즉 무역은행 또는 외화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기타 외국환관련 은행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제6조). 북한에서 合法的으로 취득한 外貨는 합법적으로 保護되며 相續도 가능하다(제9조). 이 법은 외화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貿易契約과 支拂協定에 따르는 거래, 무역외 거래, 은행에서 조선화폐를 사거나 파는 거래, 자본거래 등으로 制限함으로써(제11조) 외화의 流入에 따른 經濟混亂을 최소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44) 중국의 經濟特區 戰略은 經濟特區를 對外經濟開放의 窓口로 활용하여 경제성장을 촉진시키는 동시에(經濟的 目標), 特區에 시장경제제도를 도입하여 사회주의경제체제와 융합시킴으로써 소위 「中國式 社會主義體制」를 구축하는 실험장으로 활용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體制改革的 目標).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 중국은 특구내의 생산과 유통 등 資源配分을 주로 市場調節機能에 맡겨 왔다.

45) 북한 外貨管理制度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國家에 의한 集中管理 및 外國換業務 專門銀行制度를 채택하고 있다.

외화현금, 외화유가증권과 귀금속은 제한없이 북한에 搬入할 수 있다(제22조). 그러나 搬出의 경우 그 對象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첫째, 外貨現金은 은행이 발행한 外貨交換 證明文件이나 入國時 세관신고서에 밝힌 금액범위 내에서만 북한영역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제23조).

둘째, 外貨有價證券은 외화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북한 영역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그러나 입국시 세관에 신고한 외화유가증권은 승인을 받지 않고도 반출할 수 있다(제24조). 自由經濟貿易地帶의 경우 해당문건이나 稅關申告書 없이 외화현금, 외화유가증권을 북한영역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제25조).

셋째, 貴金屬의 경우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북한영역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입국시 반입한 귀금속은 세관에 신고한 범위내에서만 반출할 수 있다(제26조).

이처럼 북한이 外貨의 搬出入과 관련하여 반입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입국시 申告한 외화와 자유경제무역지대내에서의 반출 등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의 경우에 있어서 외화관리기관의 承認下에 외화를 반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外貨保有高를 늘리기 위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외국투자가는 북한영역 밖으로 기업운영에서 얻은 이윤과 기타 소득금을 세금없이 전부 送金하거나 자기 자본을 제한 없이 移轉할 수 있다(제27조). 또한 외국투자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노임과 기타 합법적으로 얻은 외화의 60%까지를 북한영역 밖으로 송금하거나 반출할 수 있다(제28조).

이것은 북한이 外國人投資法 및 기타 법령에서 규정한 외국투자기업의 과실송금과 외국투자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의 勞賃 등의 送金을 허용함으로써 외국투자가들의 투자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

외화관리질서를 위반한 자에게는 情狀에 따라 罰金을 부과하며, 不法의 으로 去來한 外貨와 物件을 没收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銀行去來를 中止시킬 수 있다(제29조).重大한 結果를 초래한 자에게는 情狀에 따라 行政的

또는 刑事的 責任을 부과한다(제31조).

나. 問題點

첫째, 외국투자기업은 貿易銀行 또는 外貨管理機關이 승인한 은행에 外貨口座를 설치하고, 모든 외화거래는 이 구좌를 통해서 하도록 하고 있는 동시에, 외화이용기관·기업소·단체는 分期別·年間別 외화재정상태 表를 外貨管理機關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북한의 외화통제가 심한 편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이와 같은 북한의 외화관리제도는 외국투자기업이 所要 外貨를 輸出이나 海外借入 등을 통해 자체 조달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內需市場에 판매하여 북한 「원」화를 이윤으로 얻는 경우 轉換性 外貨로의 兌換이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

셋째, 외국투자기업 및 투자가가 기업운영에서 얻은 이윤과 기타 소득을 전부 送金하거나 自己資本을 제한없이 移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제27조), 실제로는 외화로 받은 이윤이나 기타 소득이 아니면 외화로 송금할 수 없을 것이다.

넷째, 외국투자기업의 외국인종업원은 임금 등 合法的으로 얻은 外貨의 60%까지 송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例外的으로 그 보다 많은 금액을 송금하는 것을 허용하는 例外 規定도 둘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⁴⁶⁾

IV. 綜合的 評價와 展望

1. 綜合的 評價

북한이 당면한 經濟難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외국자본 및 기술도입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지만, 합법법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外國人投資關聯 法令

46) 중국의 경우 합법적 수입의 50%까지 송금할 수 있으나, 國家外貨管理局의 承認을 받으면 그 이상도 가능함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만으로는 충분한 外資導入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1992년 10월부터 1993년 1월까지 사이에 새로이 6개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령을 제정하는 한편 합영법 시행세칙을 개정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외국인투자관련 법령정비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 먼저肯定的인側面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外國人投資法 등 3개 외국인투자관련 법령 제정과 外國投資企業 및 外國人 稅金法 등 3개 後續 法令補完措置로 북한의 外國人投資制度는 外形上으로는 대폭 개선되었다. 북한의 새로운 외국인투자제도의 특징과 개선된 사항은 ① 中國의 經濟特區 방식 수용에 의한 투자우대지역(자유 경제무역지대) 설치, ② 外國人的 100% 全額出資 등 다양한 투자형태의 허용, ③ 優待措置 강화 등 투자유인의 확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尖端科學技術分野에 대한 優待措置를 취한 것이라든가, 또는 과거 합영법에서는 외국인의 전액출자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었음을 감안할 때 외국인 투자법이 비록 100% 外國人 單獨投資 허용을 自由經濟貿易地帶로 한정하고 있기는 하나, 전액 외국인출자에 의한 외국인기업 창설을 허용한 것은 외자유치에 대한 북한의 강한 의욕을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외국인투자법에서 토지의 50년 임대, 각종 세제상 혜택, 외국인 투자재산의 國有化 禁止, 利潤의 國外送金 許容 및 經營秘密 保障,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合意에 의한 價格決定 등을 명시한 것은 앞으로 외자유치 및 확대를 촉진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外國投資企業 및 外國人 稅金法이 適用稅率을 中國보다 대부분 낮게 책정함으로써 북한이 相對的으로 유리한 外資進出 條件을 제시하고 있음도 주목되는 부분이다.⁴⁷⁾

이처럼 북한이 합영법 발표이후 8~9년만에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법규를 정비한 것은, 제한적이긴 하나 대내외 정세변화에 따라 法·制度的 裝置의 보완을 통하여 외국인의 對北投資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려는 노력과 함께 外國人投資를 嘉勵한다는 原則과 政策方向을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對外經濟開放의 政策轉換 意志를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조

47) 三星經濟研究所, 「1992 北韓經濟와 南北關係」, p. 42; 「中央日報」, 1993년 2월 9일
자 참조.

치는 그동안 북한의 자력갱생원칙에 입각한 主體經濟路線 추진으로 선진과학기술도입을 소홀히 한 것이 과학기술분야의 낙후 뿐만 아니라 경제난 심화를 초래하게 된 주요 요인이었음을 뒤늦게나마 인식하였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둘째, 최근 제정된 일련의 외국인투자관련 법령에서는 과거에 비해 透明性과 具體性이 제고되었다. 기존 합영법 체계하에서 외국인투자를 규율하는 법령은 합영법, 합영회사소득세법, 외국인소득세법 및 이들의 시행세칙이 전부였고, 기타 사항은 북한법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어떠한 법령이 적용되는 가가 불명확하였다. 또한 법령의 내용도 抽象的이고 宣言的이었기 때문에 합영관련 문제의 해결은 대부분 金日成 및 金正一의 方針이나 北韓監督機關의 判斷에 委任되어 있었다. 그런데 1992년 10월에 개정된 합영법 시행세칙은 합영회사의 법적 성격과 활동범위, 합영회사의 조직, 등록절차, 이사회와 합영회사 운영방식, 합영회사 결산방식, 합영회사의 존속·해산 및 청산절차 등에 관해 보다 상세하고 투명한 조항들을 두고 있다.⁴⁸⁾

셋째, 과거의 합영법은 ‘북한영역안에서 북한의 회사 또는 기업소와 다른 나라의 회사 또는 기업소 또는 개인과 합영하는 경우에 적용’되도록 하고,例外的으로 ‘재일 조선상공인을 비롯한 해외에 거주하는 조선동포’에 대해서만 적용되도록 하였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조선」정책에 따라 한국은 合營法에서 말하는 ‘다른 나라’가 아니며, 더욱이 한국은 ‘海外’의 地域이라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同法의 南北關係에 대한 適用은 法理上 不可能 하였다. 또 어떤 의미에서는 북한이 사실상 합영법 제정 당초부터 조총련계와의 합영에 중점을 두었던 것이라고 할 수도 있었다.

그에 비해 이번에 제정된 外國人投資法은 “공화국영역 밖에서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들도 이 법에 따라 투자할 수 있다”(동법 제5조 후단)고 규

48) 裴鍾烈, “北韓投資法令 整備에 따른 우리의 對北投資政策方向,” 輸銀調查月報, 제12권 제3호 (1993. 3), pp. 11~14 ; 이러한 투명성과 구체성은 북한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장려 및 투자제한·통제조항들에서 특히 잘 나타나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Ibid., pp. 17~21 및 金容浩, “北韓의 投資開放措置 分析,” pp. 15~17 참조.

정하고 있다. 自由經濟貿易地帶法의 경우에도 외국인 뿐만 아니라 공화국 영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최근 제정된 외국인투자관련 법령들은 모두 이와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상과 같은 규정에 비추어 한국인이나 한국기업도 외국인이나 외국기업과 마찬가지로 북한에 투자할 수 있다는 解釋이 가능하며, 또한 동일한 맥락에서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한국인 또는 한국기업이 100% 全額出資하는 單獨投資도 할 수 있다는 해석이 성립될 수 있다 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⁴⁹⁾

주지하는 바와 같이 남북 기본합의서와 분야별 부속합의서 末尾에서는 남북한의 정식국호가 표기되고 있는 바, 外國人投資法에 의할 때 대한민국은 「공화국 영역밖」의 지역이라는 해석도 일견 形式論理의으로는 가능한 듯이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아직까지 북한의 대남정책에 특별한 변화가 없음을 감안할 때 ‘북한은 「하나의 조선」논리에 입각하여 여전히「共和國」을 韓半島 全體로 解釋하고 있다는 주장⁵⁰⁾ 이 보다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된다. 지금까지의 남북관계를 감안할 때 남북관계에 있어서 法的인 形式論理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남북한간 체결된 諸合意書에서는

49) ‘共和國 領域 밖에 거주하고 있는 朝鮮同胞’라는 표현은 한국인의 투자 유치를 적극 희망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즉, 合營法에서는 남한기업이나 개인을 투자당사자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이번에 발표된 法令들에서는 모두 「공화국 영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들도 이 법에 따라 투자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남한기업이나 개인에 대해서도 對北投資 門戶를 事實上 開放한 점도 肯定의으로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다. 統一院 教育弘報局, “북한의 외국인투자관련법 분석 평가,” p. 22 참조 ; 또한 貿易船 및 船員들에 대해서 無查證制度에 의한 自由入港을 허용키로 한 조치는 외국투자업체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의 대북투자에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낙관론도 개진되고 있다.

50) 李東馥, “남북대화 : 1993년의 전망,” 「새시대 상황에서의 남북관계」, 남북문제 대토론회(서울: 서울신문사 정경문화연구소, 1992 12. 28), pp. 36~37 참조 ; 합영법에는 「재일조선상공인을 비롯한 해외거주 조선동포」로 되어 있었으나, 외국인투자법에서는 「공화국 영역밖에 거주하는 조선동포를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동법의 人的適用範圍에 있어 종전보다 포괄적이나, 남한의 기업·개인 포함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은 보호대상에 「대만동포」를 명시하고 이들의 대중국 투자를 장려하는 중국의 「臺灣同胞의 投資獎勵에 관한 規程」(關於鼓勵臺灣同胞投資的規定)과 비교하여 미흡하다고 평가된다.

서명란을 제외한 본문에서는 正式國號는 물론 남한, 북한도 아니고 南側, 北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도 아울러 유의해야 한다. 요컨대 이 문제에 관해서는 북한당국의 明示的 態度表明이 있을 때까지는合理性이나一般的慣例에 따라 판단하기는 곤란하므로 좀더 북한의 태도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⁵¹⁾

여기서 한가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이러한 논쟁을 엄밀하게 평가할 경우, 法的·經濟的 意味보다 오히려 「하나의 조선」政策 抛棄 與否에 관련된 政治的 意味가 더욱 크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합영법 제정후 외국인 투자법 制定前이나 또는 외국인투자법이 제정된 지금이나 韓國企業이 「事實上」북한에 진출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물론 외국인투자법 제정시 우리 기업의 대북한진출은 당해기업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투자하는 형태는 아니었다. 어디까지나 우리 기업이 在日同胞 또는 在美同胞 심지어 제3국인과의 合作投資에 의하여 제3국에 現地法人 – 단지 「書類上의 會社」(paper company)인 경우도 많다 – 을 설립하여, 우리 기업이 제3국 法人の 名義 속에 과문한 상태로(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外國人 資格으로) 진출한 것이었다. 그러나 經濟的인 觀點에서 볼 때 이 경우도 북한에 진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데 異論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된다.

한편 이번에 단행된 外國人投資關聯 法令整備는 이상과 같은 肯定的인側面만 있는 것은 아니다. 여러 군데서 否定的인 側面도 나타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첫째, 북한에 투자를 하려고 할 경우, 모든 투자조건들은 당사자들간의 계약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基本的인 問題點을 안고 있다. ① 투자장려부문의 정의가 추상적이고 優待條件이 宣言的이며, ② 투자에 대한 상환과 이윤분배를 생산제품으로 하도록 규정하는 등 투자 위험을 외국투자가가

51) 이와 관련하여 ① 金達鉉 副總理가 대우의 남포공단 투자에 합의한 사실(1992. 1), ② 동인이 삼성 및 럭키금성에 투자를 요청한 사실, ③ 홍콩에서 개최된 東北亞圓卓會議(1992. 10)에서 북한의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관계자가 합작법상 「朝鮮同胞」에 한국인도 포함된다고 밝힌 점에서 볼 때 한국기업도 북한의 외국인투자 법령에 따라 투자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金容浩, “北韓의 投資開放措置 分析,” p. 15.

부담할 수 밖에 없으며, ③ 從業員 採用의 排他性과 北韓產 原資財 優先使用原則, 北韓 國內保險加入 規定 등 경영활동에 대한 북한당국의 지나친 간섭을 피하기 어렵고, ④ 분쟁발생시 현실적으로 북한의 재판기관이나 중재기관에 의해 해결할 수 밖에 없도록 되어 있으며, ⑤ 법의 解釋이나 適用에 있어서도 북한측의 慷意性이 개입할 여지가 많다는 점 등이 그것들이다.

둘째, 북한의 외자유치관련 법령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재산, 합법적 권리와 이익 또는 투자자본과 소득을 ‘法的으로 保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⁵²⁾ 여기서 法的 保護의 대상인 기업의 재산권(소유권)을 어떻게 보호한다는 것인지, 즉 北韓 民法에 따라 보호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國際法의으로 보호한다는 것인지는 不分明하다. 일견 전자일 가능성이 높다.⁵³⁾ 그러나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북한민법에서는 소유권의 종류를 국가소유, 협동단체소유, 개인소유 등 3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합영기업, 합작기업 및 외국인기업의 재산권이 이중 어디에 해당하는 가가 불분명하다.⁵⁴⁾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우리는 北韓民法을 개정하여 합영기업, 합작기업 및 외국인기업의 재산을 法人の 財產으로 분류하여 독자적으로 보호할 것을 북한에게 요구할 필요가 있다.

52) 외국인투자법 제4조, 합영법 제4조, 자유경제무역지대법 제4조 참조.

53) 外國人投資法上 외국투자기업은 北韓의 法人으로 설립되며, 일차적으로 북한법의 규율을 받는다.

54) 중국의 외국인투자관련 법령에서도 外資系 企業의 재산소유 형태에 관해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중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2가지 입장이 개진되고 있다. 하나는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합작투자기업의 소유권은 소유권법이 아니라 그 보다 하위에 있는 계약법에 의해 보장된다는 것이다. 鈴木輝二, 「東西經濟 協力と法」(東京: 三省堂, 1987), pp. 105~106; 다른 하나는 중국의 헌법이 全人民에 의한 社會主義所有와 勞動者에 의한 社會主義 集體所有만을 명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예시적인 것일 뿐이고 중국에서도 다른 형태의 소유가 금지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Masanobu Kato, “Civil and Economic Law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ol. 30 (1982), p. 453; 이와 관련, 주목할 것은 중국학자들이 個人所有企業의 存在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Tang Yufeng and Zhan Xiaoning, “Some Outstanding Issues on the Relations between TNCs and Host Country: From a Developing Host Government’s Perspective,” 「저스티스」, 제23권 1호 (1990), p. 170 참조.

셋째, 외국인투자법, 합영법, 외국인기업법 및 외화관리법 등이 외국기업의 과실송금과 외국투자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의 勞賃 등의 送金을 허용하고 있으나, 단지 ‘국외로 송금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외화로 송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⁵⁵⁾ 따라서 硬貨로 송금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다. 북한의 극심한 外貨不足을 고려할 때 外貨管理가 매우 엄격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수출기업이 아니면 이윤송금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또한 러시아와 유고슬라비아가 각기 명문의 규정으로 계약의 종료나 회사의 해산시에 투자원본의 회수를 보장하고 있으나, 북한의 합영법은 남은 재산의 분배만을 규정하는 한편, 동 시행세칙에서도 회사해산의 요건과 절차를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⁵⁶⁾

넷째, 최근 단행된 외자유치관련 법령의 정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북한 법령의 폐쇄성과 경직성이 잔존하고 있어 외국인투자 환경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이르다고 하겠다. 가령 고용 및 해고는 노동 기관을 통해야만 하며 勞動黨 外廓團體인 職業同盟의 활동을 보장하는 규정과 같이 勞務管理에 있어서도 社會主義經濟의 경직성이 외국인투자 유치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⁵⁷⁾

마지막으로 외국인 투자관련법 상호간에도 내용상 矛盾이 있고 전반적으로 법규의 抽象性으로 인하여 불명확한 점이 많다는 것을 되풀이하여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외국인투자법 등의 법률과 각각의 시행세칙을 포함하여 필요한 법령의 追加制定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55) 이에 비해 러시아는 명시적으로 외화송금을 허용하고 있고, 중국도 外換管理暫定條例에서 중국은행을 통하여 과실을 국외로 송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張孝相, “法的妥當性의 측면에서 본 南北韓 經濟交流와 協力方案,” 「國際法學會論叢」, 제35권 1호 (1990), p. 55.

56) Ibid.

57) 러시아의 경우에도 구소련 시절부터 勞務管理에 대한 엄격한 법적 규제로 인한 労使關係가 합작투자사업의 성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Tracey E. Aronson, “The New Soviet Joint Venture Law: Analysis, Issues, and Approaches for the American Investor,” *Law and Policy in International Business*, Vol. 19 (1987), p. 875.

요컨대 최근 북한이 일련의 외국인투자관련 법령정비를 통해 경제개방의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이러한 法令은 다분히 一般的·總論的 規定들을 담고 있을 뿐이어서 後續措置로서 구체적인 세칙이 마련된 다음에야 투자환경의 개선여부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즉 「소기의 성과」는 각 법률의 시행세칙 제정과 내부법과 투자관련 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후속조치가 마련된 뒤에나 나타날 것이다.

2. 展望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령의 정비후 앞으로 북한의 투자환경 및 외자도입 정책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외국인투자관련 법령의 정비로 기존 법령의 구체성 결여로 인한 외국인의 대북투자 기피현상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법제의 정비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적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외채지불연기에 따른 최하위의 國際信用度 외에도 북한의 核問題 解決에 대한 소극적 태도, 개방·개혁에 대한 기피 등의 자세는 대북투자를 억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⁵⁸⁾

둘째, 최근 북한이 대동구 무역의 부진 등으로 인한 경제난 해결을 위해 자유경제무역지대 선포, 외국인투자관련 법제도 정비 등 대외경제개방을 시도하고 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체제개방의 과급효과를 극소화하는 가운데 추진되는 「制限된 經濟開放」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경제난 해소를 이유로 체제유지에 악영향을 가져오는 것을 피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에서 당분간 북한은 「地域的」으로는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외국인투자의 실험장으로 이용하는 한편, 投資形態는 合作企業을 선호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이유는 外國人投資法은 자유경제무역지대내 외국인투자에

58) 朝鮮日報, 1993년 2월 9일자 참조.

대해서만 조세감면 등 각종 우대조치를 명시하고 있고, 외국인기업도 동지 역내에서만 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외국과의 經濟協力 形態面에서는 체제유지를 제1의 국가목표로 삼고 있는 北韓體制의 特性 및 外換事情을 감안할 때 短期的으로 북한은 북한측이 경영을 담당하고, 투자상환과 이윤분배는 합작제품을 기본으로 하는 合作企業을 선호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셋째, 이처럼 북한은 체제에 미칠 여파를 차단키 위해 外國人 單獨投資 (100% 출자) 地域을 나진·선봉지구로 제한하고 있고, 특히 法制面에서 볼 때 外國人投資法에 따른 종업원 채용을 북한의 노동기관과의 계약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등 여전히 閉鎖性과 硬直性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이는 북한이 제한된 지역만을 개방하고, 북한근로자를 철저히 감독하여 「統制된開放」을 추진하겠다는 정책의지를 표명한 것으로서 평가할 수 있는 바, 결국 북한이 經濟體制 및 制度 改革을 병행하지 않는 한 투자관련 법령 정비만으로 대외경제개방조치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는 의문시된다. 다시 말해서 북한이 외국인투자관련 법규 정비를 통한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투자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정치·사회체제의 경직성이나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낙후 등으로 인하여 서방기업의 대북투자가 短期間 內에 증대될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⁵⁹⁾ 따라서 당면한 경제난 극복을 위한 대외경제개방을 보다 확실히 추진하려면 먼저 북한사회의 폐쇄성과 법제도의 경직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社會間接資本을 확충할 것이 요구된다.

넷째, 북한의 외국인 투자관련 법규를 中國과 비교할 경우 아직도 북한의 법령들에는 相對的으로 未備點이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즉 外國人投資 法制가 개선되었다 하더라도 ① 外國人企業의 자유경제무역지대내 設立制限, ② 북한측의 합작기업 경영 전담, ③ 고용·해고의 경직성 등 아직 까지 북한의 法制度的側面에서의 投資環境은 서방자본유치의 경쟁국이라 할 수 있는 중국에 비해서 여전히 뒤떨어져 있다.⁶⁰⁾ 뿐만 아니라 북한의 政治·社會的環境이나 資源·內需市場 規模 등에서 중국보다 불리한 측면

59) 統一院 情報分析室, 「週間 北韓動向」, p. 9.

60) 중국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법규 외에도 涉外經濟契約法, 特許法, 商標權, 外國人

이 많다. 북한의 開放이 중국과 달리 市場經濟化 改革과 함께 추진되고 있지 못하는 限界 때문에 외국투자기업의 자율적 경영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며, 특히 資源配分이 중앙경제계획에 의해 결정되는 상황에서 북한내 물자구입과 판매는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短期的으로 외국투자가는 북한보다 오히려 中國을 投資對象國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서방국가의 외자유치에는 앞으로도 상당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외국인투자관련 법령의 정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경제체제 개혁·개방을 병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대규모 외국자본의 유치 확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당분간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海外同胞들의 資本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대외 경제개방조치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長期的으로 북한은 對美·日關係改善 및 南北經濟交流協力 확대를 모색하여야 한다. 이는 결국 북한이 외자유치 확대는 對外政策의 本質的인 轉換과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⁶¹⁾

投資 嘉勵規定, 기타 租稅에 관한 規定 등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차원의 법 규외에도 地方政府 次元의 特別法들이 다양하게 제정되어 있다. 그에 비해 북한의 외자유치관련 법령의 정비는 매우 初步的인 段階에 머물러 있는 형편이다.

61) 統一院 教育弘報局, “북한의 외국인투자관련법 분석 평가,” p. 24.